

#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2642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07. 0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7. 05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3. 07. 12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이유

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기금 조성

### 3. 주요내용

#### ○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

- 수입: 151,350천원

· 2023년 예치금 150,000천원(모금추정액) + 이자수입 1,350천원

- 지출: 151,350천원(예치금 전액 예치)

· 예치금 151,350천원

#### ○ 사용용도

-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
-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
-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
-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#### ○ 지원대상: 사회적 취약계층·청소년·지역공동체를 비롯한 복리 증진의 대상이 되는 고성군민

### 4. 관련근거

○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

## 5. 의결요청(안): 붙임과 같음

## 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.
-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규모는 1억 5,135만 원으로, 수입은 기타 수입 1억 5천만 원과 이자수입 135만 원이고, 지출은 예치금 1억 5,135만 원임.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, 2023년도 모금한 기부금을 기금 재원으로 하여 2024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3년도 사업비 지출계획은 사실상 없음.
- 고향사랑기금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관리·운영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금으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적정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## 8. 토 론 : 없음.

## 9. 심사결과 : 2023. 7. 12. 원안 가결함.